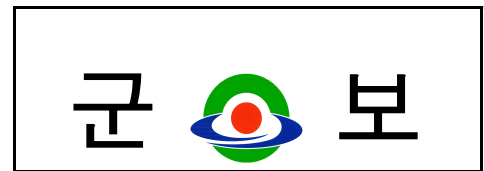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135호 2018. 12. 13(목)

선 람	기 관 의 장

입법예고

○ 예천군 명예 읍면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8-1073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명예 읍면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명예 읍면장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예 천 군



1. 개정 이유

- 2018년부터 시행된 명예군수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천군 명예 읍면장 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명 변경

- 현행 : 예천군 명예 읍면장 조례
- 변경 : 예천군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운영 조례

나.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위촉 대상자(안 제2조)

- 명예군수
 - 예천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발전에 기여한 사람
 -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
- 명예읍·면장
 - 덕망있는 출향인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

다.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임기 : 1년, 연임가능, 해촉 : 명예 손상시 해촉
- 라.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의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명예직으로 군정을 위한 활동시 필요한 사항 지원 가능
 - 조례에서 허용하는 사항 외에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음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해당 없음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마. 입법예고 결과 :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kanghs022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총무과(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전화 : 054-650-6083, 팩스 : 054-650-608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명예 읍면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명예 읍면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고 대외적인 홍보강화로 군정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명예군수는 예천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천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1. 대외적으로 예천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2. 기업활동, 학문연구 등으로 예천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군정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4. 문화·예술·체육 등 예천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
5. 국내·외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재외동포·타 시군 출신인 사람

② 명예읍·면장은 덕망이 있는 출향인 또는 예천군에 연고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위촉 방법) 제2조에 따라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위촉패를 수여한다.

제4조(직무) ①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대외적인 협의활동 및 군정 시책 홍보활동
2. 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
3. 군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군 단위 주요행사 참석
4. 그 밖에 기타 주민화합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정자문 및 읍·면행정의 자문
2.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임기와 해촉)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이라도 예천군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서식과 서류보존)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조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위촉대장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군정을 위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은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사항 외에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당지급 등)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재직 중에 취득한 공무상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조서				
성명			사진	
주소				
직업 및 직위				
생년월일		연락처		
○ 추천사항 (6하 원칙에 의할 것)				
주요경력				
년월일	이력		년월일	이력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월일				
추천자 직위 성명				

[별지 제2호 서식]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위촉대상

[illegible]